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'							(앞쪽)
접수번호	접수일시			처리기간	30일		
신청인 기재란	성명		생년월일				
	자택 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	휴대전화 문자	수신 (여부	
				[] 예	[] oh	니요
	주소						
	급여 수령 금융회사명 계좌번호		계좌번호				
	*퇴직 시 신청했던 급여 수령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작성						
변경 신청 사항	[] 퇴역(유족)연금에서 퇴역(유족)연금일시금으로 변경						
	[] 퇴역(유족)연금일시금에서 퇴역(유족)연금으로 변경						
	[] 퇴역연금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변경(연금: 년 월, 공제일시금: 년 월)						
	[] 퇴역연금일시금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변경(연금: 년 월, 공제일시금: 년 월)						
	[]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서 퇴역연금으로 변경						
	[] 퇴역연금공제일시금에서 퇴역연금일시금으로 변경						
	[] 기타 (에서	4 2	으로 변경)				
「군인연금법 시행령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				
					년	월	일
신청인					(人-	1명 또는	인)
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							
 첨부서류						수수	 :료

유의사항

「군인연금법 시행령」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해야 합니다.

없음

첨부서류

신청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(퇴직 시 신청했던 급여 수령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 만 제출합니다) 수수료 없음

작성방법

- 1. 신청인 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(실제 거주하는 주소)를 적으십시오.
- 2.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.
- 3. 신청인 기재란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.
- 4. 변경신청 사항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변경란은 「군인연금법」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사람으로서 그 초 과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, 연금 및 공제일시금 선택기간을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, 자택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.

